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80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종사자의 학대행위 발생 시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	3

I. 개요

1.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80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개호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6. 7. 7.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을 제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행위는 그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요양기관 운영자의 주의 감독 및 대처 방식 등이 다양하기에 처분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중증질환을 앓는 수급자를 강제 전원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미한 학대 사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을 원용하여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편법을 사용하며, 기관 운영자들도 이분법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3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종사자의 학대행위 발생 시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제3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행위(①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⑤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그 수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업무정지 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가 아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2항 신설, 제36조의3 신설 및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시정명령) (생략)	제36조의2(시정명령) ① (현행 제6호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제37조제1항제6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제36조의3 각 호를 고려할 때 시정조치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현행	개정안
<신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설의 운영·관리 방법의 개선, 종사자 교육의 강화, 인력 배치 또는 업무수행 체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3(처분의 양정 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6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2. 위반행위의 고의성 여부 및 행위의 반복성 3. 장기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평상시 교육·감독 조치 4. 위반행위 발생 후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5. 해당 처분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불이익 정도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 ----- ----- ----- ----- ----- . 이 경우 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6조의3의 기준에 따라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현행	개정안
1. ~ 8. (생략) ② ~ ⑨ (생략)	----- ----- -.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제6호 각 목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①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⑤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1회라도 그와 같은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내지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행정처분의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7조제1항제6호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지정취소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¹⁾에 대해서 매년 17~21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1)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른 업무정지 처분 또는 지정취소 처분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판정 행정처분 내역 >

(단위 : 건)

구분	계	업무정지*	지정취소
계	58	51	7
2023	17	13	4
2024	20	19	1
2025	21	19	2

* 업무정지 같음 과징금 포함

※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발생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에 따라 학대 사례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례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데, 학대판정과 행정처분 간의 시차 존재로 인해 판정과 처분 시점이 불일치하고, 행정소송·행정심판 등 진행 중 및 패소로 인한 처분 취소 건은 제외하였으며, 행정 처분 작성일 이후 행정소송·행정심판 등 절차를 통해 처분 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

※ 출처: 각 시도 제출자료(경기는 취합 중으로 '25.8월 취합된 자료로 작성)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러나 경미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소 과도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임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²⁾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³⁾에 따라 시설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3)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개선 명령 또는 시설장의 교체 명령 등을 하는 경우가 있음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판정 행정처분 내역 >

(단위 : 건)

구분	계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계	196	189	7
2023	54	53	1
2024	63	60	3
2025	79	76	3

※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발생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에 따라 학대 사례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례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데, 학대판정과 행정처분 간의 시차 존재로 인해 판정과 처분 시점이 불일치하고, 행정소송·행정심판 등 진행 중 및 패소로 인한 처분 취소 건은 제외하였으며, 행정 처분 작성일 이후 행정소송·행정심판 등 절차를 통해 처분 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

※ 출처: 각 시도 제출자료(경기는 취합 중으로 '25.8월 취합된 자료로 작성)

자료 : 보건복지부

□ 이에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체계 내에서 경미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가 아닌 시정명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정명령의 근거와 함께 그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참고로,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⁵⁾은 성적 학대행위 외에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7. 13.>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4) 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 발생으로 인한 행정 처분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기초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 학대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학대 행위와 그 밖의 학대행위를 구분하여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음.

□ 다만, 종사자 등의 경미한 학대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장기요양기관 내의 학대행위는 단순한 시설 운영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을 가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생명, 신체, 인격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

5) 「아동복지법」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2. 6. 21.>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1) 보호대상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시설 폐쇄		
2) 보호대상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시설 폐쇄		
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1개월 이내 사업정지	3개월 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나) 가) 외의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방임한 경우		시설 폐쇄		
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1개월 이내 사업정지	2개월 이내 사업정지	3개월 이내 사업정지
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가) 외의 경우				
다)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31조에 따른 교육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7일 이내 사업정지	15일 이내 사업정지	1개월 이내 사업정지

부 경미한 학대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가 가벼워짐에 따라 학대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성적 학대를 제외하고는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학대행위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분기준을 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학대행위가 아닌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정지처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둘째, 현행법⁶⁾은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더라도 과징금 제도를 활용하여 학대행위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셋째, 경미한 학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가 아닌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 시행규칙 [별표2]는 다음과 같이 현행법 제28조의2⁷⁾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하는 등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인 경우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처분의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2)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5)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8)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4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7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먼저, 자기방어권이 취약한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해 학대 피해의 정도가 약함을 이유로 현행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생명과 신체를 경시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학대행위가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학대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신설되는 안 제36조의3은 장기요양기관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 구체적 기준 마련은 면책기준의 적절성, 행정청의 재량 축소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 단서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제1항은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수급자에게는 타 기관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을 제공

하고 해당 기관에게는 자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이미 개정안의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지자체별로 처분기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36조의3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고의성 여부 및 행위의 반복성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법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별로 처분기준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37조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수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법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별로 처분기준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중심의 제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경중과 기관의 관리·감독 노력, 피해 회복조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

으로, 장기요양 현장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라 판단됨. 특히 제36조의3에서 규정한 피해 정도, 고의성 및 반복성, 평상시 예방 노력, 사후조치, 이용자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행정제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사료됨.

- 그러나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행세칙」이 함께 정비되어야 함. 현재 평가 시행세칙 제17조는 노인학대 관련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의 경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부대의견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시행 이전까지 「장기요양기관 평가시행세칙」 제17조를 개정하도록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심사과정의 질의를 통하여 시정명령 신설 이후 평가체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명확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현행은 노인학대 사고 발생 시 기관의 운영 형태나 예방 노력, 인적 한계 등 복합적인 고려 요인과 관계없이 ‘업무정지’와 ‘지정취소’라는 처분만을 적용하고 있음. 현장에서는 이러한 획일적 처분으로 인해 기존 입소자의 강제 전원 조치 등 처분에 따른

불이익 정도가 매우 큰 상황으로,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규정하여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개정안
에 적극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503